

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12. 20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2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12월 1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 86회(2001년도제2차정례회)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1.12.14)
상정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및 보조사업비의 지연교부로 인한 사업추진 시기 촉박으로 예산의 이월
- 나. 주요골자
 -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(안)	기정예산액	(증△감)	비 고	
총	계	206,952,408	206,652,408	0		
일	반 회 계	154,534,779	154,534,779	0		
특 별 회 계	소	계	52,417,629	52,417,629	0	
	의료보호기금	8,694,281	8,694,281	0		
	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	1,070,881	1,080,881	0		
	주 차 장	42,652,467	46,652,467	0		

- 주요내역(명시이월)
 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: 40,800천원
 - 도림2동 경로당 건립비 : 930,000천원
 -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: 84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-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진 관계로 사업비의 경우 공개경쟁에 따른 설계 등 공사계약 등의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금년내 공사발주와 사업의 완료가 어려운 관계로 예산의 이월사용이 불가피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.
10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보조금 교부 내시가 11월말에 교부됨으로써 공개입찰에 따른 설계 등 공사계약준비 시기가 촉박하여 금년 내에는 사업계약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,
-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인 도림2동 경로당 건립과 경로당도시가스시설공사(8개소)비도 11월말에 교부되었고, 도림2동사무소 이전 지연 및 공유지분 분할문제와 동결기 도로굴착 금지 등의 사유로 금년 내에는 사실상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계약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,
- 2001회계년도 제3회 일반·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을 따로붙임과 같이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청함.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40,800천원가 도림2동 경로당 건립공사 930,000천원 및 경로당도시가스 설치비 84,000천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함.
※ 명시이월(요구)조사 별첨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1조(추가경정예산)
- 지방재정법 제40조(세출예산의 이월). 끝.

□ 예산규모(총괄) 206,952,408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(안)	기정예산액	(증△감)	비고
총 계		206,952,408	206,652,408	0	
일반회계		154,534,779	154,534,779	0	
특별회계	소 계	52,417,629	52,417,629	0	
	의료보호기금	8,694,281	8,694,281	0	
	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	1,070,881	1,080,881	0	
	주차장	42,652,467	46,652,467	0	

□ 주요내역(명시이월)
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: 40,800천원
- 도림2동 경로당 건립비 : 930,000천원
-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(8개소) : 84,000천원